한국은행 충북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

2024. 3. 27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」(이하 "세칙") 및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」(이하 "절차")에 따라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대상) ① 충북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지원대상은 <별표1>에서 정한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<별표2>에서 정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사후심사 자료제출) 충북본부장은 절차 제5조제3항에 따른 사후심사시 금융기관 결제모점별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1. 대출금원장(사본)
2. 사업자등록증(명)(사본)
3. 금리산출표(사본)
4. 지원대상업체 입증 서류(유관기관 인증서 및 추천서 등)
5. 기타 충북본부장이 요청한 서류

제4조(평가관리 기준) 충북본부장은 절차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관리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1. 금리 감면폭(30%)
2. 제출자료의 정확성(20%)
3. 제출기한 준수 여부(20%)
4. 규정 준수 여부(20%)
5. 제도에 대한 이해도(10%)

제5조(기타 사항)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」, 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」,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」 및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」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00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01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기준에 의한 우선지원부문 해당업체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는 시행일 이전 취급분도 이 기준에 의해 한도를 배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0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03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0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0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0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2005년 6월 우선한도배정 신청시에 한하여 우선한도배정신청서상 “전월말 실적”은 각 금융기관이 2005년 5월 한도로 기 신청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, “월중 변동내역”은 2005년 5월 우선한도 신청 이후 당해월에 신규취급한 대출금액만을 대상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기준은 2005년 10월 1일 한도배정시(금융기관대출실적은 2005.8월말 기준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6. 11. 21.>

이 기준은 2007년 1월 한도배정시(금융기관대출실적은 2006.11월말 기준)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전 기준에 따라 선정된 우선한도 대상은 만기까지 우선지원한도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한다.

부 칙 <2007. 7. 25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(한도배정은 2007년 10월 한도

배정시부터 적용)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이미 취급한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은 만기일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08. 6. 20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(2008년 9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)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이미 취급한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은 만기일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10. 8. 25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(2010년 11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)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이미 취급한 우선지원한도 배정대상 대출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11. 10. 14.>

이 기준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(2012년 1월 한도배정시부터 적용)한다.

부 칙 <2012. 4. 30>

제1조(시행일) ① 이 기준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기준에 의한 한도배정 개시일은 2012년 8월 첫영업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앞 배정된 충북본부 총액한도대출은 종전 기준에 따른다.

부 칙 <2013. 7. 24.>

이 기준은 2013년 10월 중소기업 지원자금 한도배정시(금융기관의 2013년 8월중 취급분)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4. 8. 28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14. 12. 5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 다만,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특화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대출은 확인서의 유효기간 이내에서 종전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부 칙 <2015. 4. 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15. 6. 29.>

이 기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5. 10. 30.>

이 기준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5. 12. 8.>

이 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6. 6. 20.>

이 기준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7. 6. 23.>

이 기준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7. 8. 31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②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충북본부장이 부여한 금융기관별 사전한도는 2017년 12월 배정시까지 적용한다.

부 칙 <2019. 8. 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0. 1. 28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1. 8. 30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3. 3. 24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<2023. 6. 15.>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(2023. 8. 30)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 제2항의 기준 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부 칙 (2024. 3. 27)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

<별표1>

지원대상업체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[1)2)]

지원대상 코드	지원대상	지원부문	선 정 기 준
A3	혁신기업	일반	①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성능인증서를 받은 기업 ② 기술보증기금이 선정한 "Kibo A+멤버스" 기업 ③ 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"혁신리딩기업" ④ 국제적으로 제품에 대한 품질 및 규격 등을 인증 받은 기업 - ISO(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) - JIS(Japanese Industrial Standards) - UL(Underwriters Laboratories Ins.) 등 인증 또는 마크 획득 기업 ⑤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·학·연 지역컨소시엄 참여기업 ⑥ 보유 또는 사용중인 기술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한 기업
A4	녹색기업	일반	①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6조의2에 의거 녹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②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에 의거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③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8조에 의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기업 ④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인증한 "GR(Good Recycled Product,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)" 마크가 부여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선정한 "HACCP(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,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)" 인증을 받은 기업 ⑥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기자재 생산 기업
A6	추천기업[3)]	전략	① 충청북도청이 선정한 "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" 수상 기업 ②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선정한 "우수중소기업인상" 수상 기업 ③ 충북지역 소재 상공회의소가 선정한 IP기반 해외진출지원 대상 기업 및 충북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④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및 충청북도청이 선정한 예비사회적기업 ⑤ 고용창출 우수기업 - 충청북도청이 선정한 "고용우수기업" - 대출취급월 현재 직전 1년간(대출취급월-12개월부터 대출취급월-1개월까지) 기간평균 상용근로자 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10% 이상이면서 전년동기대비 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

지원대상코드	지원대상	지원부문	선 정 기 준
A7	지역 특화산업 영위기업	전략	① (재)충북테크노파크로부터 충청북도 대표산업 영위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충청북도청이 선정한 "품질경영우수기업" ③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인증한 경제자유구역 입주 중소기업
A8	지역 전략산업 영위기업	전략	- 충청북도청이 선정한 "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" 기업
A9	전입기업	전략	- 타 지역으로부터 충북지역으로 이전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<별표1-1> 업종 영위 기업
A11	소재·부품 생산기업	전략	-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라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문기업
A13	농림 수산업 관련기업	전략	-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01 내지 0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(상시근로자수 500인 이하 농림축산업자·농어업법인 포함)
A14	명절·재해자금 등 필요기업 4)	일반	① 설, 추석 등 자금성수기에 충북본부장이 특별히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기업 ② 수재, 화재 등의 재해 및 노사분규 장기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충북본부장이 특별히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기업
A15	기타 지원기업 4)	일반	- 충북지역중소기업금융지원협의회 또는 한국은행 충북본부 중소기업금융지원상담창구 등을 통해 자금애로를 호소하는 기업 중 충북본부장이 자금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기업
A16	경기부진·경기민감 업종 영위 기업	특별	- 다음의 경기부진업종 및 경기민감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충청북도 소재 기업 1) 음식.숙박업 : 55~56(단, 주점업(5621)은 제외) 2) 도소매업 : 45~47 3) 여행업 : 752 4) 운수업 : 49, 51~52 5) 여가업 : 90~91(단,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(9124), 무도장 운영업(91291)은 제외) 6) 조선업 : 311 7) 해운업 : 501~502

주: 1) 지원대상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
2) 금융기관의 대출실행일이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
3) 유관기관 추천업체의 경우 업종별 자금지원 형평성, 각 지역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
4) 각 지역본부장이 지원비율·지원한도·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

<별표1-1>

전입기업(A9) 업종기준

구 분	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(KSIC 제10차)	업 종
농림어업	A01~A03	업종제한 없음
제조업	C10~C34	업종제한 없음
건설업	F41~F42	업종제한 없음
운수 및 창고업	H49~H52	H49211(도시철도 운송업)과 H4923(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)을 제외한 업종
정보통신업	J582	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	J60221	프로그램 공급업
	J61299	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
	J62	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
	J63	정보서비스업
관광 관련업	I551	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 (단, 해당 업종 영위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야 함)
	I561	음식점업 (단, 해당 업종 영위가 지역 관광협회에 등록되어야 함)
	M733	사진촬영 및 처리업 (단, 해당 업종 영위가 지역 관광협회에 등록되어야 함)
	N752	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(단, 해당 업종 영위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어야 함)
	R9022	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
	R91210	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
제조업 관련서비스업	M70	연구개발업
	M71400	시장조사업(여론조사업 제외)
	M71531	경영컨설팅업
	M72122	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
	M72129	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
	M7291	기술 시험, 검사 및 분석업
	N75994	포장 및 충전업
	E37	하수, 폐수 및 분뇨 처리업
	E38	폐기물 수집운반, 처리 및 원료재생업
	E39	환경 정화 및 복원업

<별표2>

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[1)]

업종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
운송관련 서비스업	52915 주차장 운영업
주점업	5621 주점업
금융 및 보험업	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부동산업	68 부동산업
전문 서비스업	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
교육 서비스업	855 일반 교습학원
보건업	86 보건업
오락관련 서비스업	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1 이용 및 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

주: 1)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